

제주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9나149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제주지방법원 2021. 1. 19 선고 2019나14974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7가단51091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전해청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현

변론 종결2020. 11. 17.

판결 선고2021. 1. 19.

제1심판결제주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7가단5109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29.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1. 12. 12. 접수 제903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증여계약을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D는 원고로부터 2009. 10. 21.에 1억 원을, 2009. 11. 6.에 2억 원을, 각 이자율 연 6%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C은 D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C은 2011. 12. 11.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피고는 2014. 10. 29. 자신의 동생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 판단

피고는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1. 11. 29.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2017. 12. 1.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증여계약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6. 10. 6.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의 원고에 대한 차용원리금채무가 잔존하고 있었음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당시 연대보증인인 C에 대한 연대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고,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4.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 즉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참조).

연대보증인의 부동산 증여행위 당시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1. 11. 29. 당시 C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적극재산 가액 합계는 별지2 표 기재와 같은 근거로 2,556,320,055원임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1. 11. 29. 당시 C의 소극재산 가액 합계는 별지3 표 기재와 같은

근거로 2,620,268,000원임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준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로 인하여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었거나 그 초과상태가 가중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C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당시 이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와 전득자인 E의 악의는 추정된다(피고는 위 추정을 번복할 주장·증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5.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친 전득자 E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지만,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가액배상 대신 원물반환을 구할 수도 있는바(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원물반환을, 예비적 청구로서 가액반환을 구하였으므로, 원물반환을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선택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선택에 따라,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따라서 예비적 청구1)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현룡

판사하승수

판사서영우

별지

1)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논리적으로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선택적 관계에 있는 각 청구에 원고가 순위를 붙여서 청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